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제공 : 근로복지공단〉

판결요지

원고는 뇌경색 발병 당시 51세로서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고속에서 5년 8개월 남짓 1일 11시간을 넘게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고속버스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한 1997.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5일간 또는 3일간 휴무 없이 연속 근무를 하여 왔는데, 고속버스 운전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하는 업무로서 도로상황, 다른 교통수단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는 등 집중력을 요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여 온 데다가 재해 직전의 연속근무로 인하여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20772

[요양불승인]

【당사자】 원고, 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피고처분취소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5. ○○○고속관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부산영업소 소속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7. 11. 14. 부산발 성남행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그 날 08:30경 경북 칠곡휴게소 기사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다.

나. 이에 원고는 1998. 2. 4.경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가 통상의 근로를 하여 왔을 뿐이고,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가) ○○○고속 부산영업소 소속 고속버

스 기사의 수는 10명으로 그 영업소에는 부산, 성남 간, 동서울 간, 부산, 대구 간 3개 노선에 10대의 고속버스가 운행중이다.

(나) 원고는 2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보통 06:30(또는 10:30) 성남행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을 출발하여 약 2시간 정도 운행하다가 평선휴게소 또는 칠곡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 운행하여 11:30(또는 15:30) 성남에 도착한 다음, 다시 13:00(또는 17:00)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을 출발하여 18:30(EH는 22:30)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경로를 따라 약 11시간 이상을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교통체증 또는 사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운행시간들에 맞추어 운행할 수 있지만, 주말 또는 휴일에 운행을 하게 되거나 운행 도중 교통사고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운행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도 하며, 부산, 성남 간 1회 왕복 운행시 그 운행거리는 약 830km 정도가 된다.

(다) 1996. 다시 ○○○고속의 고속버스기사들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약 1.69회이었는데, 1997. 11.경 원고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2회정도이었고, ○○○고속 부산영업소의 운행 노선 중 부산, 성남 간 노선의 운전기사의 업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라) 원고는 1997. 10. 1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30일 동안 20일을 근무하였는데, 딸의 결혼으로 인한 이틀간의 경조휴가(1997. 11. 9.~11. 10.)를 내기 위하여 1997. 10. 24.부터 같은 해 28.까지 5일간, 같은 해 11. 5.

부터 같은 달 7.까지 3일간 각 연속 근무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0.까지 휴무일 및 경조 휴가 등으로 각 휴무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틀간 근무한 후 같은 달 13. 휴무하였다가 같은 달 14. 근무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경색으로 오른쪽 반신마비가 오게 되었다.

(마) 당시 ○○○고속은 그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을 감원하려는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뇌경색의 원인, 업무상 과로와의 상관관계 등

(가) 원고는 뇌경색 발병 당시 51세 남짓(1946. 10. 15.생)으로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1996. 5. 16. 및 1997. 6.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에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나, 1997. 여름 이후 피로를 느낀 나머지 몇차례에 걸쳐 한약을 복용하였다.

(나) ○○○고속의 경우 고속버스기사는 전영업소에 180여명 정도가 있는데 매월 그 중 4내지 5명이 과로로 병가를 내고 있고, 위 회사에는 그 병가를 모두 인정하여 주고 있다.

(다) 뇌경색이란 대뇌동맥이 혈전이나 색저네 의하여 폐쇄되는 등 뇌혈류 장애로 인하여 뇌조직의 혈류가 감소하여 그 기능이 저하 또는 정지되거나 뇌조직의 괴사를 초래하는 질병이다. 뇌경색의 기전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동맥의 혈전증 및 색전증, 심장병으로 인한 뇌동맥의 색전증, 기타 비동맥경화성 뇌혈관 질환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심장병, 부정맥, 당뇨병, 일과성 뇌 허혈 발작, 흡연, 음주, 다른 약제의 남용, 앓아서 하는 활동, 비만, 두경부 손상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편 위와 같은 기준 질환이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를 진찰한 동의병원 신경 외과 김○○은 원고에게 뇌경색의 원인이 될만한 뚜렷한 질병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상황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고,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서○○도 원고에게 과거 병력상 뚜렷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상황에 비추어 과로가 위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 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 10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뇌경색 발병 당시 51세로서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000고속에서 5년 8개월 남짓 1일 11시간 을 넘게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고속버스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한 1997.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5일간 또는 3일간 휴무 없이 연속 근무를 하여 왔는데, 고속버스 운전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앓아서 하는 업무로서 도로 상황, 다른 교통수단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는 등 집중력을 요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여 온 데다가 재해 직전의 연속근무로 인하여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원고가 1997. 1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3일간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기간 동안 딸의 결혼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딸의 결혼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뇌경색이 그 딸의 결혼식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만에 의하여 유발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뇌경색은 딸의 결혼식이라는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판례

3월호~5월호까지 '건강과 식이'를 집필하신 손숙미 교수의 연재를 마치고,
7월호부터는 홍주영 소장(BH 영양연구소)이 새로 집필하실 예정입니다.